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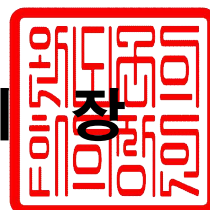
완도군의회 공고 제2025 - 8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박 재 선 의원
3. 제정이유
 - 완도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안 제3조, 안 제4조)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의 설치(안 제5조, 안 6조, 안 7조)
- 그 밖의 지원표시 및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안 제8조, 안 제9조)
-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안 제10조)
-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11조, 안 제12조)
- 시행규칙(안 제13조)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4. 14. ~ 2025. 4. 18.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완도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그 밖에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 제2항과 같다.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